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5

발의연월일: 2024. 6. 14.

발 의 자:고민정·강경숙·한창민

김성회 • 어기구 • 정준호

윤종오 · 김준형 · 박용갑

김남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 지 금품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을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가 공직자의 업무 등에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신고 및 금지하는 의무조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점은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임.

이에 동 개정안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불법하게 받은 경우 배우자를 처벌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방 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3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의 배우자.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5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의 배우자.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22조(벌칙)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2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
	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공직
	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u>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의</u>
	배우자.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
	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 ④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⑤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	
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	

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 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 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 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 를 취소한다.

1.·2. (생 략) <신 설>

3. (생략)

⑥ • ⑦ (생 략)

<u>.</u>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 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공직 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의 배우자.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 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 3. (현행과 같음)
- ⑥·⑦ (현행과 같음)